

양남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(경미한)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14호(2010.04.01)로 시장정비사업 구역으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제2012-329호(2012.11.29)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제2015-318호(2015.10.15)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고시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-34호(2019.02.21)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(경미한)변경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된 양남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추진계획을 (경미한)변경 승인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6월 4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

가.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(변경없음) : 양남시장정비구역

나.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(변경없음)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 정	양남시장정비구역	양평동1가 30번지	1,956.7	-	1,956.7	준공업지역

다.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(변경)

구 분	기 정	변 경
성 명	양남시장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강종희)	양남시장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강국진)
주 소	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24길 4, 2층	좌 동

라. 사업추진계획 변경 승인일 : (경미한) 변경 승인 고시일

마. 사업추진계획

- 1)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- 2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- 3)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(변경없음)

4) 건축시설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(변경)

구분	대지면적(m ²)	건폐율(%)	용적률(%)	연면적(m ²)	높이·층수 (지상/지하)	용도	비고
기정	1,956.7	67.65 이하	391.36이하	13,468.66	40.00m 이하 (12층/4층)	공동주택,판매시설, 근린생활시설 ※대장면적 3,168.42m ²	공동주택 78세대
변경	1,956.7	68.448 이하	391.283 이하	13,388.5247	42.00m 이하 (12층/4층)	공동주택,판매시설, 근린생활시설 ^{주)} ※대장면적 3,024.3375m ²	공동주택 78세대

주) 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 제2~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 제한

5) 건축물의 배치·형태 등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6)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바. 입점상인 보호대책(변경없음)
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의한 입점상인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

2. 사업추진계획 (경미한) 변경 사유

- 양남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건축 계획내용 반영 및 시장정비사업 추진자의 성명을 변경하고자 함.

3. 관계서류 열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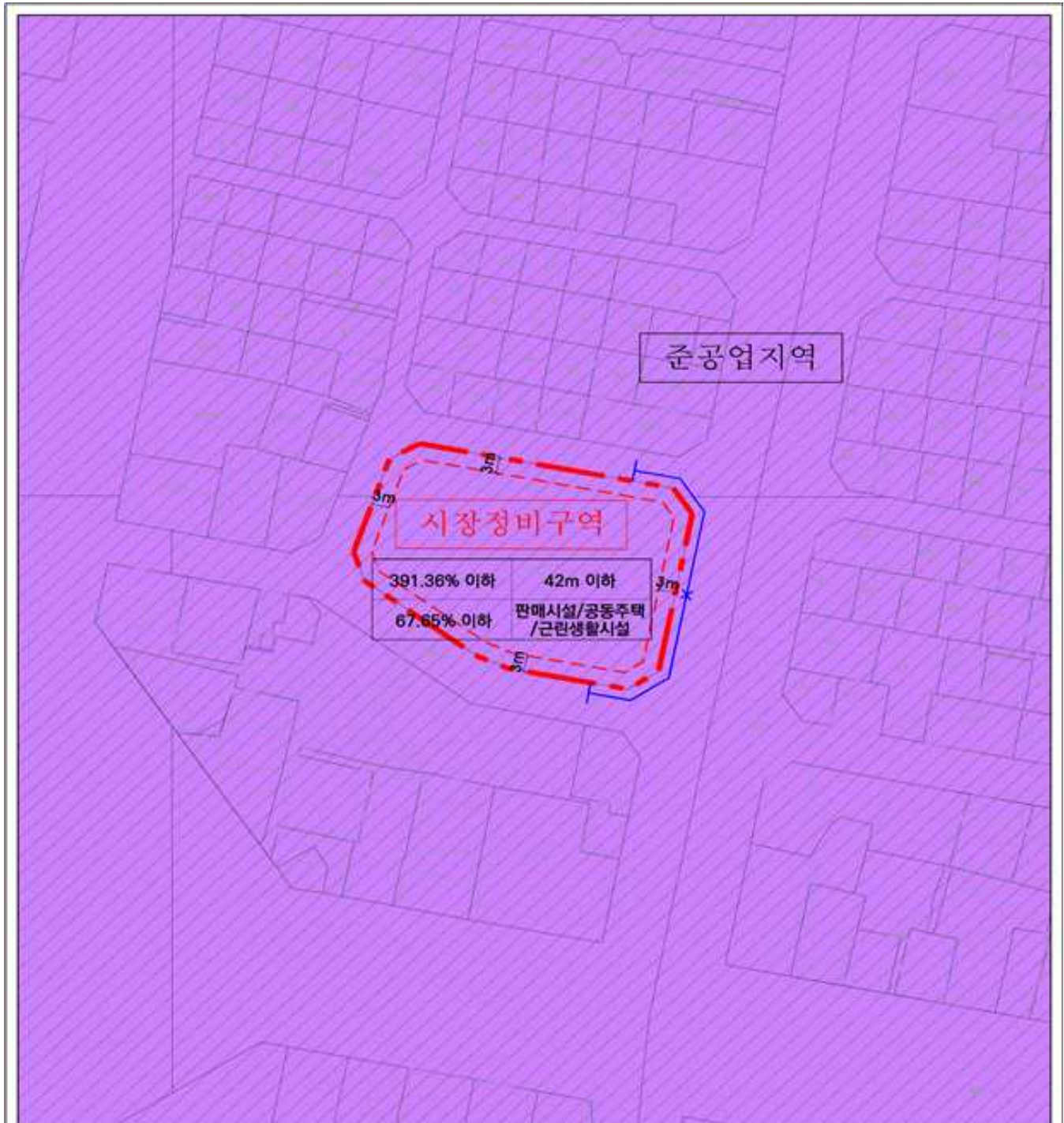
-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(☎02-2670-3428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- 따로 붙임된 시장정비구역 결정도와 관계 도면(지형도면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기타

- 사업추진계획은 향후 관련 행정절차 이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■ 관계도면

[시장정비구역 종합결정도 : 기정]



■ 범 례

- 시장정비구역
- 지적선
- 준공업지역

- | | |
|-----|-------|
| 용적률 | 용 적 률 |
| 건폐율 | 건 폐 율 |
| 높 이 | 높 이 |
| 용 도 | 용 도 |

- 건축한계선
- 차량출입불허구간

양남시장정비사업
추진계획(변경)

시장정비구역
종합결정도(기정)



[시장정비구역 종합결정도 : 변경]

